

부속선운항관리규정



다 물 도 호

(주)남해고속

개 정 이 력

○선명 : 다물도호(다물도 부속선)

개정일자	개정항목	변경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18.05.31.	운항관리표지	남해프린스호	삭제	항로변경
“	제3조 3항	5분이내	5-10분 이내	실제시간적용
“	제8조 2항	운항관리센타247-9466	247-9457/9458	수정
“	“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122/119)	누락, 추가함
2018.06.06.	제2조 1항	중선운항통제관	삭제	선임되어 있지않음
“	제6조 2항	“	“	“
“	제6조 3항	목포해양경찰서장이-- - 중선운항통제관	삭제	선임되어 있지 않음
“	제8조 2항	중선통제관	삭제	“
“	“	246-9457	246-9466	확인 유지
2020.04.20	[별지 제8호 서식] 운항관리표지	선명 : 남해스타, 남해린호 남해엔젤, 핑크돌핀	남해스타 삭제하고 뉴엔젤, 남해프린스, 뉴돌핀 추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코로나19-한시)
2020.07.03	[별지 제8호 서식] 운항관리표지	선명 : 남해린호, 남해엔젤, 핑크돌핀, 뉴엔젤, 남해프린 스, 뉴돌핀를	선명 : 남해린, 남해엔젤 핑크돌핀, 뉴엔젤, 뉴돌핀, 뉴퀸, 남해프린스로 변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코로나19-한시)
2021.3.31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③ 신설	-	③ 운항통제기준 : 초쾌속선과 동일	운항통제기준 : 본선과 동일 일치
	제 5 조 : 선박운항	3.기상악화시 또는 태 풍 접근 등에는 계류색 을 증강하거나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 한다.	3.기상악화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 혹산도항으로 피항 또는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피항지 혹산도항 추가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 체계에 관한사항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 (선조치 후 보고) (중선) - - 삭제	본선 (쾌속선) 【비상상황 연락기관】 으로 일치 되게 변경	【비상상황 연락기관】 : 본선과 일치
2022.7.1	제9조 : 기타사항	① 중선운항관리규정을 중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 -	① 중선운항관리규정을 중선 및 본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 -	나폴리호 운항관리규정 과 동일
2022.12.7.	제목	중선운항관리규정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개정이력	선명:000호(00도 중선)	선명:000호(00도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1조	중선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2조 선박운항기준	①②항 중선	①②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4조 여객 승·하선	①②⑤항 중선	①②⑤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5조 선박운항	①②항 중선	①②항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6조 운항관리	③항 1,2,3. 중선	③항 1,2,3.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8조 유사 시 긴급보 고체계에 관한사항	중선 3. 중선	부속선 3.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9조 기타사항	① 중선	① 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2022.12.7.

부속선 운항관리 규정

제 1 조 : 목적

이 규정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객선 (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육지간 여객의 중계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부속선 “다물도호”의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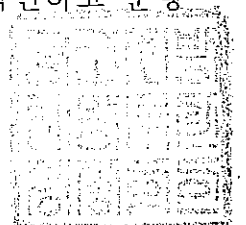
- ① 부속선선장은 출항전 또는 운항중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부속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에 통보하고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선선장은 운항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부속선 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와 협의하여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항통제기준 : 초쾌속선과 동일

제 3 조 : 운항항로(별첨)

- ① 운항구간 : 흑산면 다물도리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서 요청하는 지점에서 접안할 수 있다.
- ② 운항거리 : 500m 이내
- ③ 운항시간 : 5 - 10분 이내
- ④ 항로수심 : 3m~30m
- ⑤ 항해장애물 : 없음.

제 4 조 : 여객 승·하선 (본선과의 견현 높이차 30Cm이내)

- ① 여객의 승하선시는 부속선선장 및 본선선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한다.
- ② 여객은 정원 범위안에서 승선할수 있으며 승선인원은 본선선장이 확인하고 통제한다.
- ③ 여객은 승선 즉시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도록 한다(여객배치도 별첨)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지정된 선착장을 이용한다.
- ⑤ 부속선선장은 출항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보관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항구간의 기상 상태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 시켜야 한다.
- ⑥ 부속선선장 및 본선선장은 부속선의 안전성 및 복원성을 감안하여 정원승선 또는 적량화물을 적재토록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위험물 적재금지)



제 5 조 : 선박운항

① 출항준비 사항

부속선선장은 출항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

② 운항종료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

1. 운항종료후 다물도리항 선착장(석축부두)에 계류.
2. 부속선안전관리 책임은 선주(선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기상악화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 흑산도항으로 또는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 운항관리

①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1. 정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차례 중회 운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객정원만이 승선 했을지라도 여객 휴대화물의 적재에 따른 복원성을 감안하여 승선인원을 적절히 감원 승선시켜야 한다.

② 출항전점검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1항(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선장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본선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보완 조치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③ 부속선운항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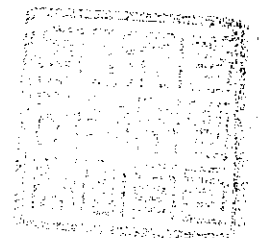
1. 부속선선장은 본선선장과의 상호안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부속선선장은 부속선에 특이사항 발생시는 지체없이 본선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속선선장은 여객의 승하선시 및 부속선운항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 부속선 정비 및 점검

① 부속선선장은 법정검사시 철저한 정비후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운항한다.

② 안전시설,구명설비,소화설비등은 출항전 점검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③ 사업자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2항(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월1회 이상 부속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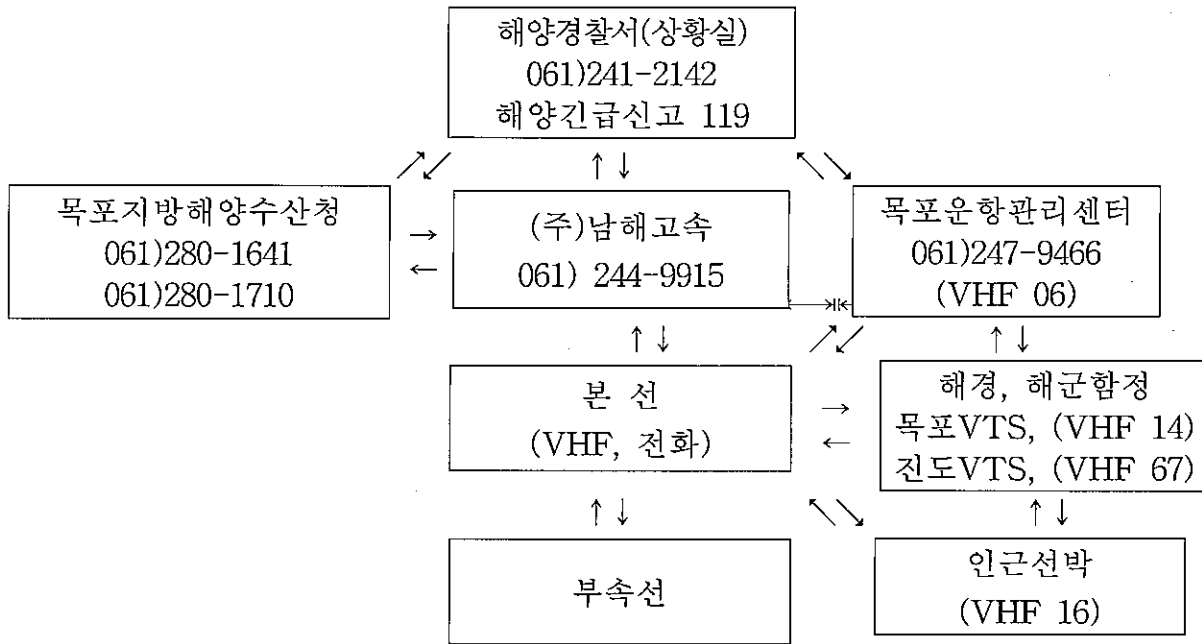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2.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비상상황 연락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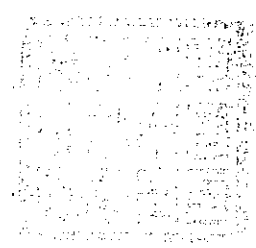
3. 비상시 종선과 본선과의 연락은 통신기(VHF)·휴대전화와 수기 등으로 한다.
4.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에 통보
5. 사고내용 및 원인등의 조사 기록유지
6. 피해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 기타 사항

- ①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부속선 및 본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 사본을 부속선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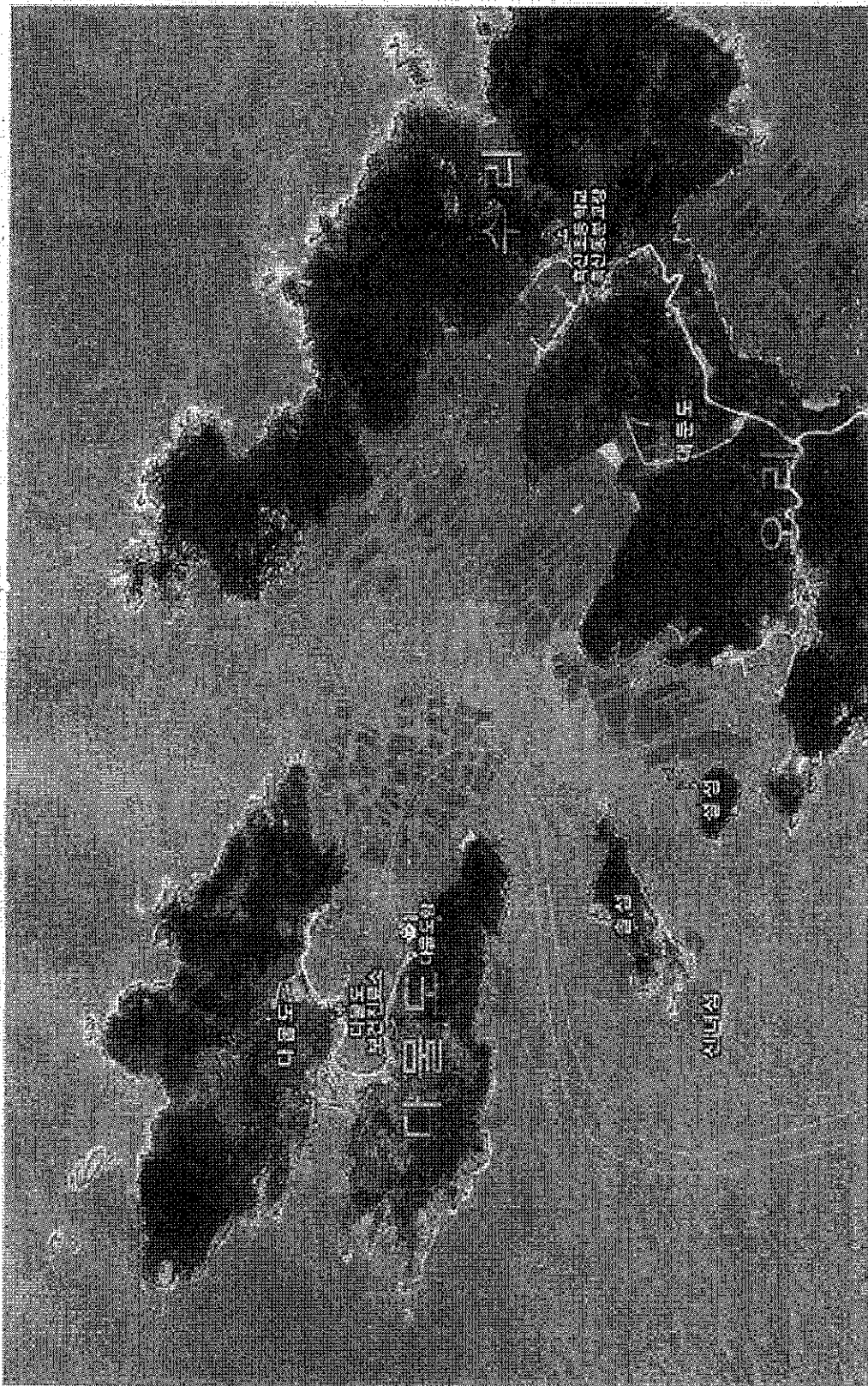
붙 임 :

1. 운항항로
2. 여객배치도
3. 어선검사증서
4. 어선특별검사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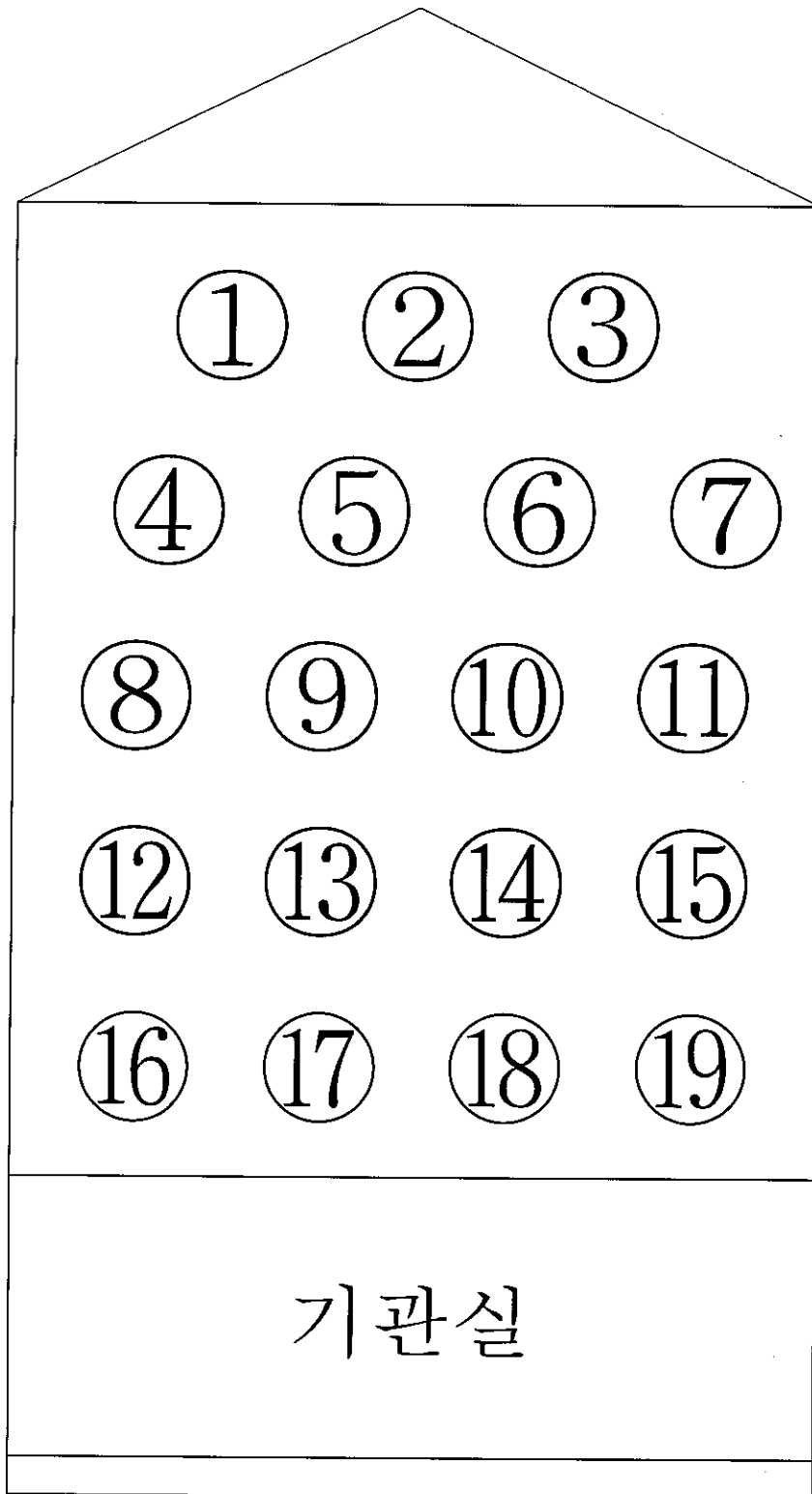


1. 운항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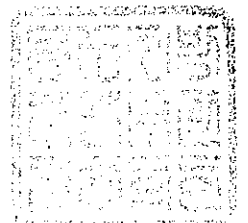
[별첨 1] 운항항로
○ 기항지명 : 흑산면 다물도
○ 종선명 : 다물도호



여객배치도



부속선명 : 다물도호



3. 어선검사증서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항구 Port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130801-940915
선박의 재료 Ship's Material	FRP	총톤수 Gross Tonnage	2.5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저장(우선)	길이 Length	12.35m
주요기관 Main Engine	디젤기관	인원 Crew	20명
배의 길이 Ship's Length	12.35m	어선장비 Radio Equipment	무선전화
승객승무원의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20명 Crew 20명	1등 Other Personnel	19명
항해와 관련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장비기준 제60조(별표4) 적용 * 15호에 따라 어선인양을 금지함 * 어선장비 및 사람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증명서를 받은 어선(공선)에 등재하는 사항임. 		
유효기간 Validity	2018년 03월 16일 부터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2023년 03월 17일 까지 unt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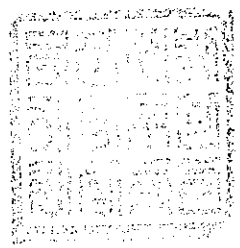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03월 1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인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10mm x 297mm (보존용지) (중) 220g/㎡



4. 어선특별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증서번호: 1302013-6489136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대우요호	이선번호 Official Number	1302013-6489136
어선의 종류 Ship's Material	어선	총톤수 Gross Tonnage	0.35톤
어선의 종류 Type of Fishery	어선		
추진기관 Main Engine	디젤기관	기종 Type	264 (kW) 300 (PS)
배의 길이 Ship's Length	12.35 미터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무선 전화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20 인 (10 승선원) Total D. J. Crew	1 인 P. Other Personnel:	19 인 (P)
항해의 조건을 소견 Conditions for Navigation	- 출항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합성하여, 주항박지(어획선이 하선하는 경우)로부터 어획선 도하지않아지도록 함됨		
유효기간 Validity	2018년 03월 19일 부터 2023년 03월 17일까지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8년 03월 1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인

210mm x 297mm (변경용지)